



### 국정감사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과학문화재단, 한국과학재단 2007. 10. 2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원자력연구원

#### 1. 고리 핵폐기물 저장고(제4 중저준위 임시저장고)

건축법 위반 내진설계 안해

- 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저장고는 ‘교육연구시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 1. 기관고유사업 평가 집안잔치...

한국과학문화재단

#### 1. 인쇄매체 콘텐츠 풀 구축 사업하는데 과학기자 해외연수?

- 과학기자 해외연수 지원 왜 하나, 과학문화 발전 당위성 없어
- 과학실험 영상콘텐츠 활용방안 미비, 저작권 확보 아직도 미처리

한국과학재단

#### 1.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2004년도 이후 중간탈락률 0%

#### 2.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 선정 대학 확대 필요

## 고리 핵폐기물 저장고(제4 중저준위)

### 건축법 위반 내진설계 안해

- 원자력연구원 핵폐기물 저장고는 ‘교육연구시설’-

#### □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현황

-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및 고준위 폐기물은 원전내 임시저장고에 보관. 현재 중저준위 임시저장고는 9개소, 고준위 건식저장고는 월성원전 1개소가 있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 현황

본부별	저장고	준공(허가)년도	비 고
고 리	제 1,2,3 저장고	‘78.’79.’87	‘88. 1. 6 이전 건축법상 내진설계 기준 없음.(건축물 구조계산기준 적용)
월 성	제 1 저장고	‘83(82.3)	
영 광	제 1 저장고	‘87(86)	
울 진	제 1 저장고	‘89(88.10)	-88.1.6 건축법 내진설계기준 제정 -건축법상 울진, 영광은 지진구역1 지역으로 내진설계 대상지역 아님. -건축법상 고리는 지진구역2지역으로 내진설계 대상지역임.
고 리	제 4 저장고	‘92(90.5)	
울 진	제 2 저장고	‘97(92.4)	
영 광	제 2 저장고	‘99(96.1)	

- 원자력연구원에는 중저준위 임시저장고 3개소, 고준위 임시저장고 2개소(하나로, 조사후시험시설건물 내부) 설치, 핵폐기물 보관 중

####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현황

구 분	저장고	준공년도	비 고
고준위	제2저장고(2)	‘88	- 연구시설로 허가 - 바닥, 벽면 일부 철근콘트리트조/ 벽면 상단은 철골조에 단열제판넬 마감
중저준위	제1저장고(3)	‘88	

## □ 문제점 및 질의

### <고리원자력본부>

- 고리 제4 중저준위 임시저장고는 1990년 건축 당시, 건축법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건물이나 내진설계를 앓고 건축하였음.
  - 1990년 고리 제4저장고 건축 당시 적용되는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2906호, 1990.1.18 일부개정) 제16조(구조안전의 확인) 제1호를 보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을 포함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
    - 1호 “나”에는 “지진구역에 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2의 지역 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종합병원·병원·발전소·공공업무시설·통신촬영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관람집회시설 및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인 판매시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 고리본부장, 고리원전은 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해 당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진하중)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지진구역2에 해당되며, 고리 제4저장고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제곱미터(약 300평)가 넘는 2,858제곱미터(약 858평-건물등기부 등본)이고, 원자력발전소임.
  - 그리고 당시 시행령 <별표0> “건축물의 용도구분” 25번에 “발전소”라고 되어 있어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하는 개념임.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지진하중) 지진구역

구 분	해 당 지 역	지역계수
지진구역 1	광주직할시, 강원도(화천군을 제외한다.), 전라북도 고창군,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광양군을 제외한다.), 경상북도 울진군, 제주도	0.08
지진구역 2	지진구역 1을 제외한 지역	0.12

- 당시 원자력법 제2조(정의) 제 10호에 “관계시설”이라함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 시행령(대통령령 제 12729호, 1989.6.16 일부개정) 제9조에서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시설로 1.원자로 냉각계통시설, 2.계측제어계통시설, 3.핵연료물질의 취급시설 및 저장시설, 4번에 방사성폐기물의 폐기시설,(5,6,7,8은 생략)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음.
  - 또한,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KINS의 답변에서도 “원전에서 운영중인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원자력법 제2조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4호의 정의에 따라 원자로의 관계시설로 분류됨”이라고 하면서 “따라서 원자력 법령상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적용되는 제반 원자력 규정이 적용됨”이라고 하였음.(현행 원자력법에서도 핵폐기물 저장고는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지 이용시설도 아님.)
  - 따라서 고리 제4 저장고는 내진설계 대상 건물이 맞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 고리본부장, 고리 제4저장고보다 먼저 지어진 고리 제1, 2, 3 저장고와 월성 제1 저장고 및 영광 제1 저장고는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 지어졌고, 내진설계 기준이 제정된 후 지어진 울진 제1저장고는 내진설계 대상지역이 아님.
  - 따라서 고리 제4저장고보다 먼저 지어진 6개 저장고 모두가 내진설계를 앓고 건축했다 보니, 고리 제4저장고도 당연히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줄 잘못 알아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 본부장의 입장은?

## <KINS/ 원자력연구원>

- 원자력연구원장, 고준위 및 중저준위 임시저장고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주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허가를 받아 핵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임시저장고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이 맞는지?
  - 원장, 고준위 및 중저준위 임시저장고를 보면, 바닥과 벽면 일부는 철근콘크리트조이고 벽면 상부는 철골조에 단열제 판넬로 마감했는데, 아무리 임시저장고라 하지만 고준위 및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건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KINS 원장, KINS의 규제업무가 건물구조보다는 피폭관점에서 검사를 한다지만, 원자력연구원의 이렇게 허술한 건물은 피폭관점에서 봐도 방사선 유출이나 물리적방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원자력연구원 중저준위 임시저장고에 방사선감시기 등 측정장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KINS에서 검사시 지적사항은 아닌지?
- 원자력연구원장은 방사선감시기 등 측정장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인지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 KINS 원장,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 폐기물 임시저장고는 말 그대로 폐기물을 영구처분하기 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내진설계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고리 제1·2저장고’가 1978년·1979년 준공되어 현재 9개의 저장고가 30년 가까이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방사성폐기물을 우리나라처럼 30년을 임시저장하는 경우가 있는지?
- KINS 원장, 우리나라는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물처분장이 확정되기까지 오랫동안 지연된 것이 문제이지만, 핵폐기물을 30년동안 한 곳에 저장한다고 생각했으면, 언제 지진이 발생할지 모르고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핵폐기물 저장고의 건축기준에 대해서 (외국의 기술 지침이 아닌) 원자력관련 법률에서 재차 규정할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규제기관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KINS 원장, 원전사업자가 각종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하면 규제기간에서 검토, 심사를 하여 운영변경허가를 승인하는데, 법적으로 처리기간이 없음. 우리나라 어떤 행정기관에서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이 없는 경우는 없음. 처리기간이 있어야 원전사업자가 이에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처리기간이 없다는 것은 규제기관이 알아서 처리할 때까지 사업자는 무작정 기다리라는 말밖에 안됨. 운영변경허가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도 많은 만큼, 처리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또 원전의 건설 및 운영허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기간(원자력법 제 21조의3)이 신규설계의 경우는 허가신청 접수후 24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허가 처리기간을 보면, 영광6호기는 28개월, 울진6호기는 31.5개월 소요되었고, 건설허가 처리기간을 보면, 영광5,6호기 22개월, 울진 5,6호기 23개월, 신고리1,2호기 38개월, 신월성1,2호기는 53개월이 소요되어 처리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음.

실제 소요기간(단위 : 개월)

구 분	영 광		울 진		신고리		신월성	
	5호기	6호기	5호기	6호기	1호기	2호기	1호기	2호기
건설허가	22		23		38		53	
운영허가	19	28	19	31.5	-	-	-	-

※ 안전심사와 호기별 사용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운영허가 발급

※ 반복 또는 표준설계 : 허가신청 접수 후 15개월이내

○ KINS 원장, 규제기술 품질의 향상과 업무의 증가로 심사의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명시되어야 하고, 처리기간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적 처리기간을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기관고유사업 평가 집안잔치...

■ 현황

- 평가 일시 : '07. 1. 11(목) 14:00 ~ 18:00
- 평가 대상사업 : 기관고유사업 (8개 과제사업)
- 평가위원(7명)
  - 외부위원(3명) : 전풍일 (통제기술원 이사), 민병주(원자력연구소 원자력연수원장)  
강건기(과학기술부 원자력통제팀장)
  - 내부위원(4명) : 최영명(전문위원), 윤완기(통제정책부장), 신장수(통제이행부장), 오성록(기획행정부장)
- 평가항목(※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평 가 항 목	평가점수
사업 목표의 달성도	40
사업 내용 및 수행 과정의 적절성	20
사업 성과의 우수성	20
사업 관리의 적정성, 향후계획 등	20
계	100

○ 과제별 평가 결과

사 업 명	과제책임자	평가결과	비 고
통제정책지원	<u>윤완기</u>	85.6	1 3 1
통제정책개발 사업	조성연	86.4	
통제기술개발	민경식	91.2	
국가감사 및 IAEA 사찰지원	<u>신장수</u>	88.0	
핵주기시설 안전조치 운영	나원우	91.2	
물리적방호 및 연구시설 안전조치운영	김정수	85.6	
원자력통제 홍보협력	최관규	87.2	
원자력통제 교육정보	김순목	85.6	

## ■ 문제점 및 질의

- 올해 1월 실시한 원자력통제기술원의 8개 과제의 기관고유사업의 평가를 보면, 집안잔치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함.
  - 통제기술원의 『기관고유사업평가요령』 제 17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②항을 보면, “평가위원은 분야별 위원장을 포함한 원내·외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원자력통제기술원의 기관고유사업 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이 3명이고 내부위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위원 중 통제기술원 이사 1인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내부위원이 5명임. 따라서 온정적인 평가가 될 소지가 매우 큼. 또한, 여기에다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점수로 산술평균을 내면 평가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음.
  
- 원장, 평가위원 수를 늘리고 외부 평가위원의 비율을 적어도 50% 이상은 되어야 평가의 객관성이 조금 더 담보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 8개 기관고유사업 중 과제 책임자 2인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과제를 평가하는데, 적어도 과제책임자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겠지만, 자신의 과제를 자신이 평가한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라고 생각함. 따라서 『기관고유사업평가요령』을 개정해서 기관고유사업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의 견해는?

인쇄매체 콘텐츠 풀 구축 사업하는데 과학기자 해외연수?

- 과학기자 해외연수 지원 왜 하나, 과학문화 발전 당위성 없어

□ 이 사업은 과학커뮤니케이션활성화사업의 ‘인쇄매체 콘텐츠풀 구축’이라는 단위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이 사업의 목적은 저술 및 취재활동 지원을 통해 신문·잡지 등의 인쇄매체에 양질의 과학콘텐츠를 기획·보급해서 과학관련 보도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

세부 사업 목록은 ‘청소년 과학기자 발굴·배포사업’, ‘월간 과학문화지 발간사업’, 그리고 이 ‘과학기자 해외연수지원’으로 구성됨.

□ 이 ‘과학기자 해외연수지원’ 사업을 통해 2005년부터 3년간 3명을 선발해 1명이 2006년 8월, 2명이 올해 8월에 출국했는데, 석·박사 학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 해외 대학의 ‘과학 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이수하는 것이 전부임.

해당 국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전원 미국을 선택했으며 1인당 총 4천 8백만원 한도 내에서 1천 5백만원 이내의 학비, 월 250만원 이내의 생활비, 3백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가 재단에서 모두 지원됨.

□ 그런데 이 사업이 왜 ‘인쇄매체 콘텐츠풀 구축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없음. 그 연수 프로그램이 단지 ‘과학’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인쇄매체의 기자를 매년 1명씩 선발해 해외연수 지원하는 것이 과연 과학보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인지 의문이 듦.

또 재단에서는 이 연수지원사업의 목적을 과학보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담당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과학기자의 전문성 강화 및 재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적고 있음.

□ 그러나 석·박사 정도도 아닌 대학의 과학관련 프로그램 연수과정을 받는 것이 과학기자의 전문성을 얼마나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인데다, 1년 동안 최대 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지원받지만 방학이 많은 미국 대학의 특성상 실질적인 수업 월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기에 수업이 없는 달에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우려가 있음.

게다가 연수 지원 대상 중 한 명은 이미 해당 신문사의 선임급인 부장의 위치에 있어 과학담당 전문기자를 육성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심지어 매년 경쟁률이 약 2대 1에 불과해 제대로 된 지원 공고를 통해 모집하였는지도 의심스러움. 이에 대해 단장의 답변을 바람.

### **과학실험 영상콘텐츠 활용방안 미비, 저작권 확보 아직도 미처리**

□ 문화재단의 과학커뮤니케이션활성화 사업에는 ‘과학실험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매우 잘 되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업임.

이 사업은 초·중·고 교과 과정 내의 과학실험을 인터넷플래시나 영상매체로 디지털 콘텐츠화해서, 과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과학실험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초등학교 교과실험 124점, 중학교 47점, 고등학교 34점의 총 205개의 영상콘텐츠를 제작함.

이 영상콘텐츠들은 학교 내에서 실습하기 어렵거나 재료 준비 등의 이유로 직접 하기 어려웠던 과학실험을 선정해 디지털과 영상의 두 가지 형태로 제작했으며 현재 디지털 콘텐츠는 과학문화재단의 ‘사이언스올([www.scienceall.com](http://www.scienceall.com))’ 웹사이트에서 서비스 중임.

본 의원이 보기에도 쉽고 재밌어서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등 퀄리티가 높고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이런 좋은 콘텐츠를 개발해놓고 아직까지 별다른 활용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안타까움. 현재 영상콘텐츠는 사이언스올 웹사이트에서만 재생이 가능함.

이에 대해 과학문화재단은 향후 영상매체로 제작된 이 콘텐츠를 과학방송 사이언스 TV나 주요포털, 관련 기관 등과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아무것도 확실히 계약을 맺거나 정해진 것이 없음.

□ 따라서 앞으로 잘 개발된 과학실험 영상콘텐츠를 썩히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용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사이언스 TV는 아직까지 인지도가 매우 낮아 시청률이 극히 낮기 때문에 EBS와 같은 교육방송과도 제휴를 맺는 방법을 고려해볼만 함. 콘텐츠를 CD로 제작해 일선 교육현장에 저렴한 가격 또는 무료로 배포하고, 외국에도 수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음.

앞으로 기존의 개발 콘텐츠 수를 홍보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그 수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도 중요함. 아직 저작권 등록은 안됐으나 목록 일람 정리 중으로 올해 안에 예정 중이라고 하니 신속한 처리를 부탁함.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2004년도 이후 중간탈락률 0%

□ 특정기초연구사업은 이공계 분야의 기초연구 및 학제연구를 통해 창조적 과학기술 연구인력 양성 및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함.

매년 수많은 연구 과제를 선정, 학제기초(3인 이내 공동연구)일 경우 최장 5(3+ 2)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고, 핵심기초(개인연구)일 경우 최장 4(2+ 2)년, 연간 1억원 이내 지원규모를 가짐. 2006년까지 총 9,936과제에 약 646억원을, 올해에는 이전 연도의 계속과제를 포함 1,112과제 960억을 지원했음.

□ 그런데 제대로 된 연구수행 감독을 위한 중간 단계평가 결과, 그 평가 대상자조차 거의 선별이 되지 않는 데다, 2004년도부터는 평가 결과 연구 지원사업에서 탈락된 과제는 전체 중 0%인 것으로 드러남.

단계평가는 5년 지원의 연구사업의 경우 3년 후에, 4년 지원일 경우 2년이 지난 후 측정되는 중간평가로 서면평가(발표평가) → 종합평가 → 위원회 심의로 이루어지며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연구비 지원에서 탈락됨.

각 연구과제 관련 연구전문가 5인이 서면평가해서 80점미만의 결과를 얻으면 발표평가를 실시하게 하며, 발표평가에서 70점 미만일 경우 연구비 지원이 중단됨.

□ 그런데 서면평가가 80점미만으로 중간 발표평가 대상으로 지정된 과제는 2005년 1건, 2006년 8건에 불과하며 2007년에는 없음. 심지어 발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중에서도 탈락된 과제 없이 모두 심의를 통과함.

결국 매년 몇 백건씩 선정되는 신규과제가 2년이나 3년 후의 중간 평가 시 전혀 탈락 없이 계속과제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임.

긍정적으로 모든 연구과제가 서면평가 80점 이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하고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다고 여길 수도 있으나, 연구지원 과제 수가 올해까지 천여 건이 넘는 것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함.

비슷한 성격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NRL)의 경우 최근 3년간 과제 중간평가 탈락률이 매년 19.4%, 18.5%, 18.5%인 것과 극명한 대비를 보임.

□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잦은 중간 평가가 연구원들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04년도부터 하위 20% 강제탈락제도가 없어지고 3년 이하 과제의 중간평가를 폐지한 데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2002·2003년 과제가 각각 17건, 9건 탈락된 이후로 2004년도부터 실질적 탈락 과제가 없음.

또 특정기초연구사업의 대부분은 중간평가를 받는 5년 과제가 거의 없이 3년 과제가 대부분이기에 연구 도중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매우 미비함.

이와 같이 특정연구지원사업의 탈락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 동시에 연구비만 지원한 채 사후관리에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움.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

□ 과제 중간평가결과

- 중간평가 대상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건	1건	8건	없음

- 중간평가 결과 중도탈락, 연구비 감액 및 재심과제 없음

단계평가(중간평가)

□ 평가 개요

- 목 표 : 연구수행실적 및 차기 연구계획 계획 검토
- 평가기간 : 2006. 6. ~ 8.
- 대 상 : 8과제('03년도 선정과제)
- 단 계 : 서면평가(발표평가) → 종합평가 → 위원회심의
  - 단계평가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발표평가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지원중단.

□ 단계별 평가 방법

《서면평가》

- 평가자 구성 : 각 연구과제 관련 연구전문가 5인  
(선정 평가시 참여한 선정평가 참여자 2인 포함)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내용	배점
○ 수행 연구 실적	60점
·연구수행의 당초 목표대비 달성도	(30)
·중간 연구결과 우수성	(20)
·참여연구진 역할수행의 적정성	(10)
○ 향후 연구계획	40점
·연구수행진도	(10)
·차기년도 연구계획의 타당성	(10)
·최종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20)
합 계	100점

- 평가결과  
서면평가 점수의 산술평균에 의거 평가등급 산정

##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 선정 대학 확대 필요

□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사업은 이공계 대학생에게 경영·경제·인문사회 지식을 겸비하도록 하는 융합형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6년도에 신규 추진됨.

당초 과기부는 2006년 5월 말까지 2개 교육연구시범센터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으나 실제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놓고 과학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대한 저울질이 길어지면서 사업자체가 잠시 지연됐다가 그 해 9월 뒤늦게 한국과학재단을 통해 사업시행을 공고하고 2006년 11월 연세대와 한동대를 이공계융합교육연구센터로 선정함.

선정 대학의 교육센터는 1차년도 사업연도인 06.11.15~07.5.31(6.5개월)에 센터당 1.5억원씩, 그 이후 매년 3억 원씩 총 5년간 운영자금을 지원받게 됨.

□ 이 이공계 융합교육연구센터는 이공계 전공의 학생이 자신의 전공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육성하고, 이공계 융합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이공계 대학생을 과학기술 전문지식과 기술경영 마인드를 보유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연구를 시행함.

이에 따라 이공계 출신 대학. 대학원생도 기존의 이공계 분야뿐만 아니라 기술 마케팅 전문가와 금융회계 전문가 등과 같은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고히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야말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해결책이 될 수 있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함.

□ 그러나 좋은 취지를 가지며 그 성과가 국내 이공계 산업에 좋은 과장을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계획되어 개소한 센터는 전국 2개 대학 뿐으로 재단에서 지원하는 기타 다른 연구사업에 비해 그 수가 애초부터 너무 적게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함.

실제로 2개 선정에 초기 신청으로 18개 대학이 물리는 등 수요가 많았지만 조사결과 아직 센터 수를 늘리는 시행계획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공계 분야에 고위공직자들이 인문계출신이 많은 것도 우리나라 이공계 침체의 원인일 수 있는데, 본 융합교육센터가 전 분야의 통찰력을 두루 가진 이공계 출신 리더를 배출하여 이 사업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지원을 아끼지 말고 더 확대시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임.